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모두의상속종신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모두의상속종신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구분	종류 및 명칭
일반가입형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모두의상속종신보험
간편가입형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모두의상속종신보험(간편가입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일반가입형]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 기간	보험 기간 유형	납입 기간	납입 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일반가입형	종신	종신	5	년	만15	70	만15	70
일반가입형	종신	종신	7	년	만15	70	만15	70
일반가입형	종신	종신	10	년	만15	70	만15	70
일반가입형	종신	종신	15	년	만15	65	만15	65
일반가입형	종신	종신	20	년	만15	60	만15	60
일반가입형	종신	종신	25	년	만15	55	만15	55
일반가입형	종신	종신	30	년	만15	50	만15	50
일반가입형	종신	종신	55	세	만15	50	만15	50
일반가입형	종신	종신	60	세	만15	55	만15	55
일반가입형	종신	종신	65	세	만15	60	만15	60
일반가입형	종신	종신	70	세	만15	65	17	65
일반가입형	종신	종신	80	세	20	70	22	70

[간편가입형]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간편가입형	종신	종신	5	년	30	75	30	75
간편가입형	종신	종신	7	년	30	73	30	73
간편가입형	종신	종신	10	년	30	70	30	70
간편가입형	종신	종신	15	년	30	65	30	65
간편가입형	종신	종신	20	년	30	60	30	60
간편가입형	종신	종신	25	년	30	55	30	55
간편가입형	종신	종신	30	년	30	50	30	50
간편가입형	종신	종신	55	세	30	50	30	50
간편가입형	종신	종신	60	세	30	55	30	55
간편가입형	종신	종신	65	세	30	60	30	60
간편가입형	종신	종신	70	세	30	65	30	65
간편가입형	종신	종신	80	세	30	75	30	75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별도의 의무가입 내용이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하지 않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기초율을 적용하여 성별, 나이, 납입기간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보장형 계약에서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 기본보험료×납입기간×12)을 납입한 이후에 납입이 가능하며, 최소 추가납입보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기 이전이라도 중도인출금액 누계에서 추가납입보험료 누계의 차액 만큼의 범위 내에서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text{기본보험료 총액} = \text{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text{납입기간}$$

다.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 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이며, 연간납입한도는 아래와 같다.

- 연간납입한도(36개월(36회 납입) 이내) = 기본보험료 × 12 × 100%
- 연간납입한도(37개월(37회 납입) 이후) = 기본보험료 × 12 × 200%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또한, 계약유지보증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위의 보험료 연간 납입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보험료 납입한도는 할인 전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6.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6개월(36회 납입) 이내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7개월(37회 납입) 이후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기본보험료의 경우 기본보험료 이상 납입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납입할 경우 만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함) 다만,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총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7. 보험료의 할인에 관한 사항

가. 일반가입형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주계약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할인할 수 있다.

가입가능한 보험가입금액	할인율
4억8천4백만원 이하	0%
5억원 이상 ~ 9억7천9백만원 이하	3%
10억원 이상	5%

- * 특약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위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인으로 인하여, 높은 보험가입금액의 할인 후 보험료가, 그 보다 낮은 보험가입금액의 할인 후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보험가입금액 구간의 가입을 제한한다.

예시)

(가) 보험가입금액 9억 9천만 원: 할인 후 보험료 100만원

(나) 보험가입금액 10억 원: 할인 후 보험료 99만원

(나)의 할인 후 보험료가 (가)의 할인 후 보험료보다 낮기 때문에, (가)의 보험가입금액 가입을 제한함

나. 보험료 할인은 일반가입형 계약에만 적용되며, 간편가입형 계약은 보험료의 할인을 취급하지 않는다.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험료의 선납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6개월(36회 납입) 이내에 한하여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36개월분까지 의무납입기간(36개월(36회 납입))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선납할 수 있다.

나.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하며, 선납할 때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이 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이 아닌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다.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계약체결시점과 달리 변경될 수 있다.

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6개월(36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는다.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

를 승낙한 때에는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 계약자는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 해지계약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다만, 계약자의 임의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마’ 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의 계약자적립액(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부활(효력회복)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라.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계약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마’ 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의 계약자적립액(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날로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부활(효력회복)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마. 부활(효력회복)이 되는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
-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

바.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일까지의 공제되지 않은 월대체공제액을 각 펀드에서 공제한다.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1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6개월(36회 납입)이 지난 후에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 4회,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1회에 한하여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이며, 『중도인출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나. 중도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인출할 때 수수료는 중도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을 부가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가’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다.

인출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연간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중도인출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하 "추가납입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추가납입계약자적립액에서 부족한 금액은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하 "기본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마.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유지보증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보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제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대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부족한 경우에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다.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 계약자 적립액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대출계약자적립액으로 적립한다.

라. 계약자는 '가'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금액(다만, 가산이율(회사가 정하는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계약자적립액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제2영업일동안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상환금액의 펀드별 분배금액은 보험계약대출시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을 따른다.

마.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바.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사.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계약유지보증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아.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을 적용한다.

14.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금액」과 「기납입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적립액의 105%」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 가.에서 「기본보험금액」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도인출이 있을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보험금액에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에서 「기납입보험료」라 함은 "17. 기납입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라. 가.에서 「계약자적립액의 105%」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한다.

15. 최저사망보험금 및 계약유지보증에 관한 사항

가. 최저사망보험금

(1) 최저사망보험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나'항의 계약유지보증기간 동안 보장

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액을 말한다.

(2) 기본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보험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을 말한다.
- ② 위의 ①의 기본보험금액은 중도인출이 있을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계약유지보증

계약유지보증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6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5)항의 계약유지보증 테스트 결과가 ‘충분’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2)항의 계약유지보증기간 동안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 계약유지보증의 시작

보험료납입경과 36개월(36회 납입)이 지난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총당할 수 없으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유지보증이 유효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유지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다만, 이 보험의 납입기간 중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에는 (5)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마지막 날에 계약유지보증 테스트를 하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계약유지보증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2) 계약유지보증기간

- ① 계약유지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종신보증, 80세보증 및 65세보증으로 구분되며, 가입나이가 60세를 초과하는 경우 최단 보증기간은 80세보증으로 한다.
- ② 최초 가입할 때 보증기간은 종신이며, 계약유지보증 테스트 결과에 따라 보증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3) 순납입보험료의 계산

- ①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② 계약자가 해당월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계약자적립액에서 특약보험료가 대체되었을 경우 순납입보험료에서 대체된 특약보험료를 차감한다.
- ③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순납입보험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text{감액 후 순납입보험료} = \text{감액 전 순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 ④ ①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되어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경우에는 순납입보험료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만큼 차감한다.

(4) 계약유지보증 기준보험료

- ①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해당 계약유지보증기간까지 사망보장을 받고자 할 경우 기준보험료 산출할 때 적용된 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해야할 최소 보험료(다만, 특약 보험료는 별도)를 말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② 기준보험료는 계약유지보증기간에 따라 종신보증 기준보험료, 80세보증 기준보험료 및 65세보증 기준보험료로 구분한다. 다만, 실제 납입 가능한 최소보험료는 종신보증 기준보험료이며, 80세보증 기준보험료와 65세보증 기준보험료는 계약유지보증 테스트에만 적용한다.
- ③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에 의해 기본보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보험료를 재계산한다.

(5) 계약유지보증 테스트

계약일로부터 매6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납입한 순납입보험료와 보증기간별 기준보험료의 누계액을 비교하여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조 건	결 과
순납입보험료 ≥ 해당 기준보험료 누계액	충 분
순납입보험료 < 해당 기준보험료 누계액	부 족

(6) 계약유지보증기간의 단축

- ① 계약일로부터 매6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계약유지보증 테스트 결과가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증기간이 단축된다는 안내를 하게 되며, 안내된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은 단축된다. 다만, 이 보험의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이후에 계약유지보증 테스트 결과가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납입최고(독촉)없이 즉시 보증기간을 단축한다.

- ②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보증기간의 단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 ③ 보증기간의 단축은 종신보증으로부터 80세보증, 65세보증 및 보증소멸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 이상의 보증기간의 단축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계약유지보증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후의 계약유지보증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

(7) 계약유지보증기간의 연장

① 보험료 납입에 따른 연장

계약자는 보증기간이 단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하 ‘보증기간 연장시한’)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현재 보증기간으로 단축된 시점으로부터 보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날까지의 연장을 위하여 납입해야하는 금액(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등)에 평균공시이율 + 1 %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가장 긴 보증기간을 최고 한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황에 따른 연장

이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연장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상환시점에 연장가능한 보증기간으로 연장된다.

③ 보험기간 중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에는 계약유지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소멸한 계약유지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유지보증이 소멸한 이후 미납된 계약유지보증비용에 평균공시이율 + 1 %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한다.

16.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계약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감액여부를 승낙할 수 있다.

나. '가'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대한 회사의 승낙여부는 계약자 신청 후 2주일이내에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승낙일 통보 후 감액되는 보험가입금액은 회사의 승낙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동일 비율로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는 회사의 승낙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17. 기납입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기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해당월 특약보험료 해당분이 납입되지 않고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기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한다.

나. 중도인출 후 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인출 후 기납입 기본보험료	=	인출 전 기납입 기본보험료	×	$\frac{\text{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인출 후 기납입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 전 기납입 추가납입보험료	×	$\frac{\text{인출 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 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기납입추가납입보험료는 변경되지 않는다.

감액 후 기납입 기본보험료	=	감액 전 기납입 기본보험료	×	$\frac{\text{감액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	---	----------------------	---	---

18.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6개월(36회 납입) 이내
계약자 적립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계약유지보증비용을 말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7개월(37회 납입) 이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계약유지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으로 월계약 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1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6개월(36회 납입) 이내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정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7개월(37회 납입) 이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정한다.

다. ‘나’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6개월(36회 납입)이 지난 후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다음의 (1)~(3)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않는다.

- (1)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잔액이 없는 경우
- (3)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20.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1.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계약유지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4)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① 장기채권형 : 펀드 듀레이션의 장기(최소 5년이상) 유지를 목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 ② 인덱스주식형 : KOSPI200 인덱스의 투자성과를 추종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종목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80%이상을 투자하고,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20%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 (2)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4)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 종류별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다음과 같다.

(기준 : 특별계정적립액)

펀드명	운영보수	투자일임 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 보수	합 계	
					매년	매일
장기채권형	0.34%	0.02%	0.02%	0.02%	0.40%	0.0010958904%
인덱스주식형	0.41%	0.15%	0.02%	0.02%	0.60%	0.0016438356%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1)의 표에서 정한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계약자적립액 이전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나’ 항 (1)에서 규정한 펀드 중에서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5%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30% 이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2)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된다.

(3) 펀드 적립액 이전

- ①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액의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펀드 적립액 이전 직후 장기채권형 펀드의 계약자적립액은 전체 계약자적립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② 회사는 ①에 따른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③ 회사는 ①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 ④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②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마.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2) (1)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펀드별로 적용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자금이체할 때 기준가격

- ① 자금이체할 때 적용하는 각 펀드의 기준가격은 아래의 ②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한다.
 - (a)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b)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다만, 계약자의 임의해지는 제외)
 - (c) 월대체공제액을 총당하는 경우
 - (d)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

(4) 펀드의 기준가격 산출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을 개시한다.

- ①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②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펀드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할 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펀드 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할 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⑥ 대량의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할 때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⑦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 할 수 있다.
-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1)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할 수 있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자.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차.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특별계정 자산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③ 특별계정 자산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⑤ ① 내지 ④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액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2.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약관 제36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에 따라 이체한다.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처리하는 경우
-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다만, 월대체공제액의 계산 및 차감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
- (7)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 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의 규정에 따른 이체 기준가격 적용일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3. 헬스케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 (1)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피보험자 등에 제공한다.
- (2)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혹은 보험 종목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 (3)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진다.
- (4)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다.

24. 펀드장기유지보너스 금액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펀드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펀드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 금액에 가산한다. 단,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펀드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는 펀드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 펀드장기유지보너스 금액 = 매월 계약해당일 전일 말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

$$\times \text{월단위 특별계정 운용보수}(\%) \times 60\%$$

- (주) 1. 펀드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은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의 월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2. 월단위 특별계정 운용보수(%)란, “21.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다.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매년 특별계정적립액에 곱하는 비율을 월단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5. 조기 계약전환 옵션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회사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계약전환 옵션의 실행(이하 “조기 계약전환 옵션”이라 한다)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본 계약을 회사가 정한 전환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조기 계약전환 옵션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계약(기본보험료를 36회 이상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회사에서 정한 사유라 함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조기 계약전환 옵션을 신청할 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2.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입·퇴원확인서
 3. 계약체결 당시 대표이사였던 직위가 전환신청 당시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4. 계약체결 당시 최대주주였던 직위가 전환신청 당시 변경된 경우 :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3) 계약자가 조기 계약전환 옵션의 실행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 이 계약의 잔여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해지한 후 이 계약을 회사가 정한 전환상품으로 전환한다.
- (4) 조기 계약전환 옵션에 따라 계약이 전환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전환된 상품의 약관 및 기초서류를 따른다.
- (5) 다만, (1) 내지 (4)에 의하여 조기 계약전환을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정한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 (6) (1)의 회사에서 정한 전환상품이라 함은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을 말한다.

26. 기타사항

가.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의 전환

계약자가 이 보험을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전환한다.

다만,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이라 함은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을 말한다.

나.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다. 계약자적립액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이후 보험기간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액 변동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

라. 회사는 상품명칭 앞뒤에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보험대리점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마.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바.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한다.

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아. 이 상품의 간편가입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별첨 제2호)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하며, 간소화된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병력 정보는 계약심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2)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한 일반심사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간편심사상품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참조)을 받는다.

(3) 본 계약의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일반심사 대상

인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보험기간 1년 이하인 단기보험 제외)에 청약하고 회사의 심사를 통해 해당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본 계약의 무효를 원하면 회사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단, 본 계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3)의 각 용어는 보험업감독규정의 정의를 따르며,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고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또한 “연금보험”이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5) 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및 별첨 제2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이 상품의 간편가입형에만 적용되며, 이 상품의 일반가입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간편심사상품의 청약 시,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청약시점 직전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보험기간 1년 이하인 단기보험 제외)을 가입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체 여부 재심사를 통해 일반가입형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동일한 담보의 일반가입형 상품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간편심사 관련]

1.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일반심사보험은 아래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비교(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비교(예시)]

*아래는 보험료 비교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일반심사보험으로는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품구분	간편심사보험			일반심사보험		
계약 승낙 여부	일반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나이	남자	여자	나이	남자	여자
	40세	000 원	000 원	40세	000 원	000 원
	50세	000 원	000 원	50세	000 원	000 원
	60세	000 원	000 원	60세	000 원	000 원
	※ 기준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최초계약			※ 기준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최초계약		

(주) 1.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옆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님에게 설명하고, 이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험설계사 _____(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교부받고,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_____(인/서명)

친권자 _____(인/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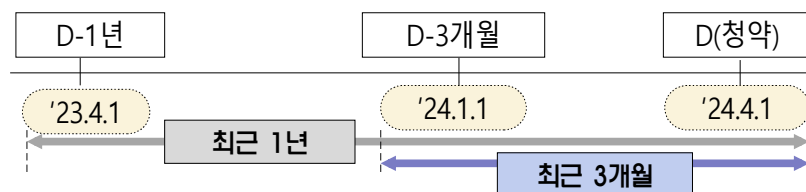
(별첨 제2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 ~ 6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3개월 이내(2,5년 이내)’는 청약일의 3개월 전일(2,5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알릴의무 기간으로 합니다.

건강 상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④ 질병확정진단 ⑤ 질병의심소견

※ 필요소견 및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외부 환경 및 기타

4. 직업에 관한 사항은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직업

직장명(근무처/소속부서)

취급업무(구체적으로 하는 일)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 ↔ 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상품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5.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피보험자: , /배우자: ,)

① 승용차(영업용) ② 승용차(자가용) ③ 승합차(영업용) ④ 승합차(자가용) ⑤ 화물차(영업용)
⑥ 화물차(자가용) ⑦ 이륜자동차(50cc미만 포함)(영업용) ⑧ 이륜자동차(50cc미만 포함)(자가용) ⑨
건설기계 ⑩ 농기계 ⑪ 기타()

6.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경우 기재

※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 알릴 의무가 없는 상품입니다.)

7. 월평균소득(계약자 기준) : ()만원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강상태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